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53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김원이 · 서삼석 · 허종식
위성곤 · 이해식 · 김남근
서영석 · 한준호 · 백혜련
김한규 · 김승원 · 정진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정밀기계 등 첨단산업 분야
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정밀 측정 활동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계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계량에 관한 정의, 산업계량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
2조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의 선진화 및”을 “산업활동 과정에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산업계량”이란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제38조 다음의 “제6절 측정기기의 교정”을 삭제한다.

제3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산업계량 지원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산업계량 관련 사업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정기준의 조사·연구·개발
2. 교정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3.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4. 교정 및 측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

제39조의3(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물질의 개발, 측정표준의 확립 및 유지, 측정방법의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9조의4(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업종별 산업계량 관련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계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계량측정정책협의회) ①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신뢰성과 적합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계량측정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관리·기준의 신뢰성과 적합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의 중요 사항

②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u>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 <u>산업활동 과정에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2. 3. (생략) <u>제6절 측정기기의 교정</u>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1의2. <u>“산업계량”이란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u> 2. 3. (현행과 같음) <u><삭제></u> <u>제2장의2 산업계량 지원</u> <u>제39조의2(산업계량 관련 사업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신 설>

<신 설>

1. 교정기준의 조사·연구·개발

2. 교정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3.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지원

4. 교정 및 측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

제39조의3(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물질의 개발, 측정표준의 확립 및 유지, 측정방법의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9조의4(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업종별 산업계량 관련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계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①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산

업통상부장관은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7조의2(계량측정정책협의회)

①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신뢰성과 적합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계량측정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관리

	<u>· 기준의 신뢰성과 적합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u>2. 그 밖에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의 중요 사항</u> <u>②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u> <u>·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